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

발의연월일: 2020. 6. 4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강기윤 · 김희국

권성동 · 임이자 · 이양수

배현진 • 박덕흠 • 홍문표

김성원 · 조해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
이처럼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,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특례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 임.

이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(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)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'특례군'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
아울러, 행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176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6조(자치군에 대한 특례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군(이하 "특례군"이라 한다)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
- 1. 인구가 3만명 미만인 군
- 2. 인구밀도(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)가 40명 미만인 군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례군의 재정자립 향상, 출산 장려,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및 교통·의료·복지·교육·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특례군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, 시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특례군에 대한 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에 따른 특례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76조(자치군에 대한 특례인정)
	①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
	하나를 충족하는 군(이하 "특
	례군"이라 한다)의 행정, 재정
	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
	대하여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
	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
	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.
	<u>1. 인구가 3만명 미만인 군</u>
	2. 인구밀도(제곱킬로미터당 평
	균 인구수)가 40명 미만인 군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
	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례군
	의 재정자립 향상, 출산 장려,
	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활
	성화 및 교통·의료·복지·교육·
	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위하여
	노력하여야 한다.
	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
	따른 특례군에 대한 각종 지원
	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
	추진해야 하며, 시책 추진을 위
	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

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 관의 특례군에 대한 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제1항에 따른 특례군이 속 한 도의 도지사는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.